

변리사스쿨
... 시험장 노트 ...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가 너였으면 좋겠어

PATENT
SCHOOL

변리사스쿨 동차종합반

(민소, 특허, 상표 종합반)

2022년 3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학원가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

**“민특상 종합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모두 포함된 과정입니다.**

등록금

온라인접수, 학원접수 가능

2,500,000

3회 분납 가능 (83.3만원/83.3만원/83.4만원)

모집대상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1) 모집기간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28일

(2) 종합반 설명회 진행

① 온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1월 25일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2월 23일 오후 4시부터

변리사스쿨 1층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

PATENT
SCHOOL

변리사스쿨 동차종합반

(특허, 상표 종합반)

2022년 3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학원가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

**"특상 종합반"은 특허법, 상표법이
포함된 과정입니다.**

등록금

온라인접수, 학원접수 가능

2,000,000

3회 분납 가능 (66.6만원/66.6만원/66.7만원)

모집대상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1) 모집기간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28일

(2) 종합반 설명회 진행

① 온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1월 25일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2월 23일 오후 4시부터

변리사스쿨 1층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

머리말

어느덧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는 만큼, 모든 수험생분들께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험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쌓이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암기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암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많이 힘드시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을 것입니다. 합격자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분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은 합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시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변리사스쿨 배상.



목차

제01절 민법

제02절 특허법

제03절 상표법

제04절 디자인보호법

제05절 화학

제06절 생물

제07절 지구과학

제08절 물리

변리사스쿨(류호권)

제 01 절

민법

2022 변리사1차 민법시험 대비 시험장자료(중요최신판례OX)

최신판례 중 다른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미 중요성이 입증된 판례들이라고 할 것이니 변리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스쿨 민법 류호권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20년 법무사, 2021년 감정평가사>

(x) :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결 2018. 7. 20, 자 2017마1565).

[예외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9. 2. 28. 자 2018마800 결정).

□□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공인노무사>

□□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년 감정평가사>

(X), (O)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

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과정,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대표기관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9. 5. 30, 2017다53265).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21년 법무사>

□□ 그러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021년 법무사>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18. 4. 26, 2016다3201).

□□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2021년 법원행시>
(○) :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물론이다. [2]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대판 2018. 6. 28, 2018다210775).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2021년 법무사>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될 필요가 없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21년 법무사>

□□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년 변호사>

(○), (X), (○)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 6. 28, 2016다221368).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 :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판 2020. 2. 6, 2019다223723).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021년 변호사>

(○)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2019년 법원행시>

(X)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2021년 법무사>

(○) : 대판 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

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법무사>

□□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19년 법무사>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법원행시>

<2021년 법원행시>

□□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법원행시>

(X), (X), (O), (X) :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

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 ①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2020년 감정평가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2019년 법무사>

□□ 甲 소유 토지 아래에 乙이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을 매립하였는데, 그 쓰레기 등이 부패,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토지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甲이 그 쓰레기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쓰레기 매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 (X)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판 2003. 3. 28, 2003다5917). ☞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 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021년 법원행시>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대판 2017. 1. 12, 2016다39422).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20년 감정평가사>

□□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020년 감정평가사>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2019년 법원행시>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021년 변호사>

(○), (X), (X), (○) :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19. 4. 3, 2018다296878).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법무사>

(X)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 4. 9, 2018다264307).

□□ X토지에 대하여 甲은 4/6 지분을, 乙, 丙은 1/6 지분씩을 각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X토지의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년 법무사>

- | |
|---|
| ㄱ.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乙을 상대로 乙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 ㉔. 만일 乙이 아닌 甲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들은 보존행위로서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㉕. 만일 乙이 아닌 甲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들은 甲에 대하여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㉔ ② ㉓, ㉔ ③ ㉔, ㉕ ④ ㉓, ㉔, ㉕ ⑤ ㉓, ㉔, ㉕, ㉖

㉓. (X), ㉔. (○)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 5. 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㉕. (X), ㉖. (X)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판 2002. 5. 14, 2002다9738).

정답 ①

□□ 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1년 변호사>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21년 법무사>

i)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ii)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전합) 2017. 1. 19, 2013다17292].

□□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2021년 변호사>

(x)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법무사>

(x)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 5. 12, 2014다52087).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그 밖의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법원행시>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x), (○)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1. 24, 2016다234043).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 할 수 없다(). <2021년 법무사>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2021년 변호사>

(○), (○) : [1]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담보라고 하는 저당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는 저당권과 분리해서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권을 상실하여 양도인 앞으로 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되거나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질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登記 없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 당연히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공시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등에게 예측할 수 없는 질권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 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때에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법 제34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당사자 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해서는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 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021년 변호사>

(○)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법무사>

(○)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법원행시>

(×)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으로서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다음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이행불능 등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위와 같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7. 6. 19, 2017다215070).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

019년 법원행시>

(○)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룰 수 있다(). <2020년 변호사>

(○)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비교판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룰 수 없다(대판 2010.11.11, 2010다43597).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2020년 변호사, 2021년 변호사>

(×)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8. 10. 25, 201

8다210539).

[비교판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판 1993. 3. 26, 92다32876).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20년 변호사>

(○) : i)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ii)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1년 법원행시>

(○) :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9. 5. 10, 2017다239311).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보증인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 쓰는 것이나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법원행시>

□□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020년 변호사, 2021년 변호사>

(X), (○)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2019. 3. 14, 2018다282473).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21년 법무사>

(○) : 대판 2019. 2. 14, 2017다274703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21년 법원행시>

(○) : 대판 2021. 5. 7, 2018다25946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020년 변호사>

□□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적용(유추적용)이 될 수 없다(). <2021년 법원행시>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021년 변호사>

(x), (x), (○)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법무사>

(○) :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이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게 되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2. 15, 2014다19776, 19783).

□□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 <2021년 변호사>

(×) :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에는 그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9. 7. 25, 2019다227817).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2021년 법원행시>
(○) : 대판 2021. 4. 8, 2017다202050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2018년 법무사>
(×) :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3. 15, 2015다 239508, 239515).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21년 법원행시>
(○) : 대판 2020. 5. 14, 2019다252042.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8년 법원행시>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8년 법원행시>

(x), (○)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판 2018. 1. 24, 2017다37324).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2021년 법원행시>

(○) :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이와 달리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2277, 42284 판결 등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법무사>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전합) 2019. 6. 20, 2013다218156].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2019년 법무사>

(○) :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판 2019. 2. 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변리사스쿨(조현중)

제 02 절

특허법

1. 2021년 주요 개정법률

직권보정범위 제한	직권보정이 신규사항추가이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66-2⑥)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사유 추가	감면 사유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자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추가(83②ii)
부당감면자 제재 신설	거짓으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 감면 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하고,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진정한 감면사유 있어도 감면 제한(83④)
심사청구료 반환 사유 확대	선행기술조사결과 통지 후에도 거절이유통지 등 심사결과 통지 전에 출원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84①v) 거절이유통지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 출원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1/3 반환(84①v-2)
심판사건 외부 전문심리위원 도입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외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154-2)
심판사건 내부 지원인력 마련	심판원 내부에 조사관 등 심판사건 지원인력을 두는 것에 대한 규정 마련(132-16③,④)
심판사건 적시제 출주의 도입	심판장은 주장·증거 제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주장·증거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 심리·판단에 참고하지 않을 수 있음(158-2)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심판장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조정불성립시에는 중지결정 취소하고 심판 재개하고, 조정성립시에는 해당 심판청구 취하 간주(164-2)

2. 2020년 주요 개정법률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강화	방법발명의 실시행위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추가(2iii) 단 배타권 효력범위는 약의의 청약행위만으로 제한(94②)
손해배상청구 금액 상향조정(침해자의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구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현행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x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x 합리적 실시료) (128②)
침해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이 공소 제기 가능(225②)
지정기탁기관 추가	부다페스트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기탁기관에 기탁하더라도 기탁 인정 가능(령2①)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대상 추가	마약류 의약품도 존속기간연장 가능(령7①)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령7-2①)
	재심사청구한 경우 거절결정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령7-2①)
임시명세서 도입	청구범위제출유예 절차 밟으면서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청구범위제출 기간까지 정식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출원취하간주(시규21⑤)
발명자 추가 절차 미비점 보완	99-2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 받은 경우 확인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발명자 정정 가능(시규28④)
PCT 보완명령 사유 추가	명세서·도면 미제출뿐 아니라, 명세서·도면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보완명령하며, 명세서 다시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시규99-2)

3. 주요기간 정리

추후보완	2개월, 1년
정당권리자 출원	확정일부터 30일
공지예외주장	공지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청구범위, 정식명세서, 번역문 제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날부터 3개월 (분할, 변경 +30일)
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일/선출원일부터 1년
우선권 주장 추가 보정	최우선일/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국내우주 선출원 취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분할, 변경, 정당 +30일)
특허료	특허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추가납부기간 6개월, 보전기간 1개월, 권리회복신청 3개월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특허취소신청	등록공고 후 6개월
PCT 특례	공지예외(기준일 30일), 특허관리인(기준일 2개월), 보정(수+번+기), 변경(수+번), 심사청구(출원인 수+번, 제3자 국내서면만료 후), 214조 신청(통지된 날부터 2개월)
공시송달	게재한 날부터 2주 후 / 게재한 날의 다음날

4. 취하간주 사유 등

출원 취하간주 사유	번역문 제출기간, 청구범위 제출기간, 심사청구기간, 변경출원, 국내우주 선출원
출원 포기간주 사유	등록료 미납
특발권 포기간주	국방상 필요한 발명 외국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사유	
----	--

5. 특허취소신청 대비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
제도 취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	결정계 절차 (특허청과 특허권자)	당사자계 절차 (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청구인 적격	누구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신청/청구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 까지(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	설정등록 후 언제나(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취하	청구항 별로 가능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취소이유 통 지 후에는 불가능)	청구항 별로 가능 심결이 확정되기 전(답변서 제출 후 에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취소/무효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원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모인출원, 공동출원위반, 권리항유위반, 조약위 반 등
심리방식	서면심리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복수 사건의 심 리	원칙 병합 심리	원칙 사건별 심리
결정/심결	취소결정(취소결정 전에 취소이유통 지),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무효심결, 기각심결 또는 각하심결
불복 소제기	취소결정,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 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 복 기각결정, 합의체의 각하결정에 대해 서는 불복불가	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청 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

6. 국제조사 vs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대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연락권	없음	있음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기간 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단일성 결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이용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2장 규정에 구속된 계약국 거주 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계약국 또 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 에 국제출원 한 경우만 적용
절차	1.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 원칙적 불허용 2. 보정 불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 관리함 2. 보정 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

없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을 권리 있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	---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 사유(시규 제106조의11 제5항)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PCT 19조 보정	PCT 34조 보정
주체	국제조사보고서 받은 출원인	국제예비심사 청구한 출원인
시기	국제조사보고서 송달일부터 2월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은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시까지
제출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횟수	1회	횟수 제한 없음
보정대상	청구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보정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7. 국제공개

국제공개예외 - PCT21(5) 국제공개 전 국제출원 취하, PCT21(6)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 PCT64(3) 국제공개 필요 없다고 선언한 국가만 지정한 경우
--

8. 실용신안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대상	발명 (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제2조3호)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제4조1항)
성립 요건	고도성 要 (특허법제2조1호→특허법제29조제2항에서 평가)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제2조1호→실용신안법제4조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제29조제2항과 상이)

진보성	쉽게 (특허법제29조2항)	극히 쉽게 (실용신안법제4조2항)
부등록사유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특허법제32조)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 안 (실용신안법제6조)
도면첨부要件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제42조2항)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제8조2항 / 실용신안법시행 규칙제17조제1항)
우선심사대상 의 상이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 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 한 특허출원 3.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 행한 국제특허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 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법시행령제9조) 5.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 출원 (특허법시행규칙제39조)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특허출원일 후20년 (특허법제88조1항)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 원일 후10년 (실용신안법제22조1항)
존속기간연장 제도	허가 등(특허법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제92조의2)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
효력제한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 (특허법제96조)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실용신안법제24조)
간접침해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제127조)	방법/물질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제29조)
생산방법추정 규정	有 (특허법제129조)	無
PCT(도면제출)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 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 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p>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p> <p>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제출명령 可</p> <p>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 可</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법 47조의 보정으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적용.</p>
침해죄	<p>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특허법 제225조 제2항)</p>	<p>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p>
몰수	<p>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31조)</p>	<p>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51조)</p>

9. 최신판례 정리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PBP 청구항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

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

[선택발명]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등은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실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참조).

[제42조 제3항 제1호]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확대된 선원]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일 인정범위]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일사부재리]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심판]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무권리자 출원]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보성]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확인대상발명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용관계]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균등범위]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닮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03 절

변리사스쿨(김영남)

상표법



1.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1) 디자인과 관계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判).

(2) 서적의 제호(判)

단행본 서적의 제호는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判).

다만, 서적의 성격, 제호의 사용 태양, 시리즈물 출시 여부, 광고 등에 따라,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判).

2. 제33조 제1항 제4호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判).

(2) 지리적 명칭이 현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야하는 것은 아니다(判).

3. 제33조 제2항

(1) 사식취한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여 다른 부분과 결합으로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 전체로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다(判).

(2) 출원상표와 동일성 있는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지정상품에 흔히 쓰이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判).

(3) 출원인은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判).

4.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수요자 기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判).

5. 제34조 제1항 제20호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6. 권리소진

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존속기간갱신(제83조)

상표권자(공유인 경우 각자)가 할 수 있다.

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7조)

심사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55조, 제1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다.

9. 제119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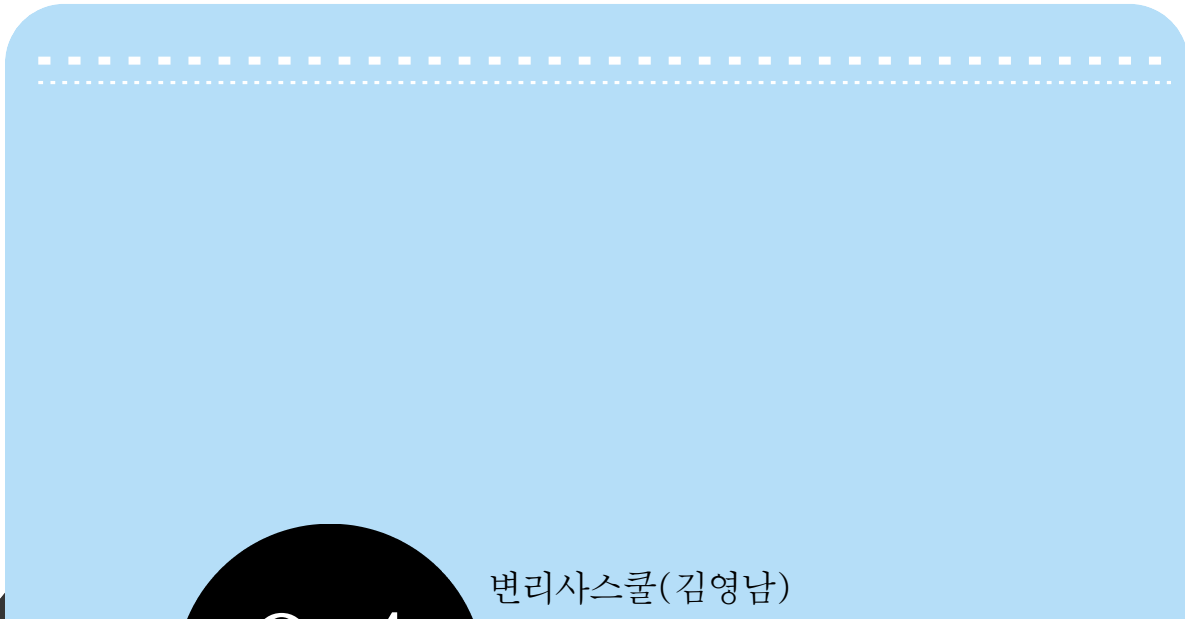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10. 마드리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되고, 2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11. 침해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제 04 절

변리사스쿨(김영남)

디자인보호법



1. 부분디자인

구법에서는 한 별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에 포함된 일부분을 부분디자인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은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중 일부(구성물품 또는 구성물품의 부분)를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글자체디자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업상이용가능성

서비스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니어서 물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4. 디자인 유사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제34조 제4호

물품의 기술적인 기능은 그 형상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라면,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도 굴구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6.. 관련디자인

(1) 관련디자인권은 독점적인 권리범위를 가진다(제92조). 따라서 관련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제92조).

(2)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의 이전 제한

기본디자인권(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과 관련디자인권(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은 함께 이전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단서 및 제96조 제1항 단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도 관련디자인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기본디자인에 관한 2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제96조 제6항).

(3)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설정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하며(제97조 제1항 단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제97조 제6항).

7. 선출원주의

후출원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모두 상정하여 선출원디자인과 비교 판단하는 것은 심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원디자인의 경우에는 동일범위만 심사하고 유사범위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8. 복수디자인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5항).

9. 출원공개

특허청장은 제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비밀디자인

출원인이 비밀디자인 청구를 할 수 있고, 출원인이나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11. 이의신청

- (1)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 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12.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이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접수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제출원 접수일이 국제출원의 제출일로 결정된다. 국제출원에 특정한 하자가 없는 경우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의 제출일이다.

13. 화면디자인

물품과 일체적으로 창작된 화면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제한이 없고, 부분디자인 형태로 보호를 받는다.

14. 화상디자인

- (1) 화상디자인에 있어서,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의 2).
- (2) 화상디자인에 있어서 실시란,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7호).



제 05 절

변리사스쿨(김선민)

화학



1.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

$F_2 > Cl_2 > Br_2 > I_2$ (표준환원전위값이 F_2 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의 반응성의 순서를 가진다. 이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말하며 음이온이 되는 것은 환원되는 과정이므로 강한 산화력을 가지는 순서이기도 하다.

ex : $F_2 + 2Cl^- \rightleftharpoons 2F^- + Cl_2$ 의 정반응은 반응성이 큰 F_2 가 음이온이 되는 과정이므로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2. 주기적 성질(유효핵전하)

① 유효핵전하는 핵이 실질적으로 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이며 실제 전하에서 전자가리움 효과(전자간의 반발력을 포함)를 뺀 식으로 표현된다. ($Z_{eff} = Z_{실제} - \text{전자가리움}$)

② $s < p < d < f$ 의 에너지 준위의 순서를 가지는데 이는 s 오비탈이 가장 큰 유효핵전하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유효핵전하가 크면 에너지가 낮다.

③ 주기율표에서 유효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항상 증가하며 예외가 없다.

3. 마디의 개수

s 오비탈 : (n-1)개의 방사상 마디 + 0개의 각마디

p 오비탈 : (n-2)개의 방사상 마디 + 1개의 각마디

d 오비탈 : (n-3)개의 방사상 마디 + 2개의 각마디

총마디의 개수 : (n-1)개

4. 주기적 성질(원자반지름)

① 단일결합의 경우 분자상태에서 핵간거리의 절반으로 정의된다.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비활성기체나 금속의 경우에는 고체 결정에서의 핵간거리의 절반이다.

② 원자반지름은 전자껍질의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도 커지고, 핵의 전하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며, 전자간의 반발력이 커지면 반지름은 커진다. 그러므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껍질의 수는 같은데 핵의 전하가 커지므로 반지름은 작아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껍질수가 커지므로 원자반지름은 커진다.

③ 양이온은 전자껍질이 없어지므로 중성원자보다 반지름이 작으며, 음이온은 전자간의 반발력으로 중성원자보다 반지름이 크다.

5. 이온결정의 녹는점과 끓는점, 격자에너지

이온결정의 녹는점과 끓는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의 세기($F = k \frac{q_1 q_2}{r^2}$)에 의존하므로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크다. 격자에너지도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크다.

ex : NaCl < NaF (전하량은 같으나 거리차이), MgO > Na₂O (전하량의 차이)

6. 결합해리에너지

g 상태에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결합해리에너지는 똑같은 C-H 결합이라도 화합물에 따라 그 값이 다르므로 평균값으로 나타내며 삼중결합 > 이중결합 > 단일결합의 순서를 가진다. 또한 결합이 길어지면 결합해리에너지가 작으므로 HF > HCl > HBr > HI의 순서를 가진다. 단 예외적으로 Cl₂ > Br₂ > F₂ > I₂로 F₂가 예외적으로 작은 값을 보인다.

7.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PV = nRT)

① 보일의 법칙(n, T일정) :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다. P₁V₁ = P₂V₂ 성립

② 샤를의 법칙(n, P일정) : 부피와 온도는 비례 관계이다. V = kT

③ 보일 샤를의 법칙 : $\frac{P_1 V_1}{T_1} = \frac{P_2 V_2}{T_2}$

④ 아보가드로의 법칙(P, T일정) : 부피와 몰수는 비례 관계이다. V = kn

⑤ 기체상수 R : $0.082 \frac{\text{atm L}}{\text{mol K}} = 8.314 \frac{\text{J}}{\text{mol K}}$

8. 부분압력과 돌턴의 법칙

$n_A + n_B = n$ (A 기체의 몰수 + B 기체의 몰수 = 전체몰수)

$P_A + P_B = P$ (A 기체의 부분압 + B 기체의 부분압 = 전체압)

$P_A = X_A \times P$ ($X_A = \frac{n_A}{n_A + n_B}$)

$P_B = X_B \times P$ ($X_B = \frac{n_B}{n_A + n_B}$)

A의 mol% = $X_A \times 100$

9.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이상기체는 PV=nRT를 만족하는 기체이며 $z = \frac{PV}{nRT} = 1$ 이다. 실제기체라도 분자량이 작은 비극성 분자처럼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인력,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으며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낮추면 실제기체도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상기체는 분자간의 인력, 반발력이 없으므로 액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반데르 바알스 방정식)

$(P + a \frac{n^2}{V^2})(V - nb) = nRT$

a : 실제기체의 인력 반발력으로 인한 압력의 변화를 고려한 상수값 ($\text{atm} \frac{\text{L}^2}{\text{mol}^2}$)

b : 실제기체 1몰의 부피 (L/mol)

11. 용액의 총괄성(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① 용액의 끓는점은 용매의 끓는점보다 높고(끓는점 오름) 어는점은 더 낮다(어는점 내림).

$$\textcircled{2} \Delta T_b = T_b' - T_b = K_b \times m \times i$$

(T_b' :용액의 끓는점, T_b :용매의 끓는점, i :반트호프 factor, m :몰랄농도, K_b :끓는점오름상수)

$$\Delta T_f = T_f - T_f' = K_f \times m \times i$$

(T_f' :용액의 어는점, T_f :용매의 어는점, i :반트호프 factor, m :몰랄농도, K_f :어는점내림상수)

③ 반트호프 factor(i)

전해질의 경우에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반트호프 factor를 고려해주어야 하며 만약 100% 해리된다면 NaCl($i=2$), CaCl₂($i=3$)이다. 반트호프 factor는 이온의 전하량이 크면 작아지고 농도가 묽어지면 이론치(100%해리값)에 접근한다.

12. 용액의 총괄성(삼투압)

$$\pi = iMRT \text{ (M:몰농도, R:기체상수 0.082, T:절대온도)}$$

$$\pi V = i \frac{w}{M} RT \text{ (M:분자량) , 삼투압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13. 반트호프 식

$$\ln K = - \frac{\Delta H^o}{RT} + \frac{\Delta S^o}{R}$$

ΔH^o 는 반응열이며 어떤 반응은 흡열반응일수도 있고 발열반응일수도 있으므로 $\ln K$ 와 $\frac{1}{T}$ 에 대한 그림에서 기울기가 달라지게 된다. 흡열반응은 음의 기울기, 발열반응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흡열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값이 커지고, 발열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값이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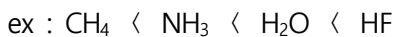
$$\ln K_1 - \ln K_2 = \frac{\Delta H^o}{R} \left(\frac{1}{T_2} - \frac{1}{T_1} \right)$$

14. 산성도 비교 및 루이스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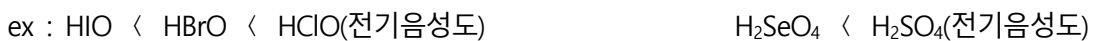
① 이성분산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한다. 음이온의 사이즈가 크므로 결합이 약화되고 음이온의 편극성도가 커서 안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음이온이 안정해지며 산성도가 커진다.



② 산소산은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산화수가 클수록 강산이다.





15. Henderson-Hasselbalch식

$$\text{pH} = \text{pKa} + \log \frac{[A^-]}{[HA]}$$

16. Nernst 식

$$E = E_0 - \frac{0.0592}{n} \log Q \quad (n:\text{전자의 몰수}, Q:\text{반응지수})$$



변리사스쿨(박윤)

제 06 절

생물



1. 세포막과 세포막 수송

- 1) 촉진확산의 특성: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물질의 순이동 일어나지 않음
- 2) 식물에서의 공동수송(2차 능동수송)의 특성: H^+ 농도기울기 이용, 뿌리세포에서 $H_2PO_4^-$ 의 흡수에 이용
- 3) 분비소낭의 세포외배출 작용의 예: 이자세포의 리파아제 분비

2. 세포호흡

- 1)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ATP 합성효소의 배열 방향 - 머리부가 기질로 돌출
- 2) ATP 합성효소의 작동 방식 - H^+ 의 이동에 의한 구조 변형(회전), 머리부에서 ATP 합성
- 3) 시트르산 회로 반응이 일어나는 구획 - 미토콘드리아 기질
- 4) 짝풀림물질의 효과 - 산소 및 NADH 소비 증가시킴, ATP 합성속도 감소
- 5) 미토콘드리아의 최종 전자수용체 - 산소

3. 광합성

- 1) 루비스코의 특성 - CO_2 뿐만 아니라 O_2 도 기질로 사용
- 2)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 비교: 미토콘드리아(O_2), 엽록체(NADP⁺)
- 3) 산소 부재 시 미토콘드리아의 반응: 시트르산 회로(기질수준의 인산화)와 전자전달, 산화적인산화 중단

4. 세포분열

- 1) 세포당 DNA 양에 따라 세포주기가 다름
양이 1인 부위: G1기 세포, 양이 2인 부위: G2기 세포, M기 세포,
양이 1~2인 부위: S기 세포, 양이 1보다 작은 부위: 사멸 중인 세포
- 2) 세포예정사가 일어날 때 염색체 절편화가 일어남(사다리 모양)

5. DNA 구조와 복제

- 1) 복제기포와 전사기포의 구분: 복제기포 - 두 가닥이 모두 주형으로 이용됨, 전사기포 - 한 가닥만 주형으로 이용됨
- 2) 세포주기 중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S기
- 3) 복제원점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오키아지 절편이 더 먼저 합성된 절편임
- 4) 전사 시에는 프라이머가 필요치 않음
- 5) 전사 시 딸사슬 합성 방향: 5' → 3' 방향

6. tRNA의 구조와 특성

- 1) tRNA의 아미노산 부착자리에 아미노산은 에스테르 결합으로 부착
- 2) tRNA의 아미노산 부착시키는 효소: 아미노아실-tRNA 합성효소
- 3) 안티코돈은 하나 이상의 코돈과 쌍을 이룰 수 있음 - 동요가설
- 4) 개시 아미노아실-tRNA가 리보솜에 결합하는 위치: P 자리

5) 펩티드기 전달효소: 펩티드결합 형성 효소, 리보솜 대소단위체에 존재하는 rRNA(리보자임)

7. 진핵생물의 유전체와 유전자 발현조절

(1) X 염색체 불활성화를 통한 유전량 보정

- 1) 포유류의 유전량 보정: 포유류 암컷의 경우 남자와의 유전량을 맞추기 위해 X 염색체 하나를 응축시켜 불활성화 시키는 현상
- 2) 바소체: 유전량 보정을 위해 불활성화된 X 염색체, 여성은 세포에 1개의 바소체 가짐, 남자는 바소체 없음,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XXY)도 세포에 1개의 바소체 가짐, 난자나 정자에는 바소체 없음
- 3) 성연관 유전자에서 이형접합성인 여성은 유전량 보정으로 인해 genetic mosaic가 나타남. → 세포마다 2개의 대립유전자 중 어느 하나만 발현함(두 가지 대립효소 중 하나만 발현함).
- 4) XIST 유전자의 발현 산물(XIST RNA)이 자신이 전사된 X 염색체에 결합하여 응축을 유도함

(2) 조절요소의 특성 확인

- 1) 재조합 플라스미드(재조합 벡터): 외래유전자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벡터)
 - ☞ 발현 벡터: 재조합된 유전자의 산물(단백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벡터
- 2) 증폭자(enhancer): 활성화자(전사인자)가 결합하고 프로모터로부터 수천 염기쌍 떨어져 있는 원거리 조절요소
- 3) 핵심 프로모터: 유전자의 바로 위쪽에 존재하고 보편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 TATA 상자 등이 포함됨
 - ☞ 프로모터 = 핵심프로모터(TATA 상자) + 조절프로모터(근거리 조절요소, 원거리 조절요소)

8. 지방의 소화와 흡수 과정

- 1) 지방의 유화: 지방덩어리가 작은 지방입자로 분해되는 것, 쓸개즙이 관여함
- 2) CCK: 담낭 수축을 자극해 쓸개즙 분비(방출)를 촉진
- 3) 리파아제: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함, 효소 활성화는 세크레틴에 의해 증가함
- 4) 소장상피세포로 흡수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SER에서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됨

9. 헤모글로빈의 산소해리곡선

- 1)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이산화탄소 분압: 높을수록 친화도 감소함(보어효과)
 - 2,3-BPG: 높을수록 친화도 감소함
- 2) 산소는 헤모글로빈의 헴(heme)에 결합하여 운반됨,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잔기에 결합하여 운반됨
- 3) 세포호흡 증가 →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 →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력 감소

10. 혈액의 구성과 적혈구용적률 변화

- 1) 원심분리를 통한 헤파린-처리 혈액 분리: 혈장층(55%), 연막(1% 미만), 적혈구용적(45%)
- 2) 적혈구용적률(헤마토크릿): (적혈구 기둥의 높이×100)/전체 혈액 기둥의 높이
- 3) 적혈구용적률 감소(빈혈): 골수 내 줄기세포 감소
 - 빈혈 환자는 전신 조직으로 산소를 적게 공급함
- 4) 적혈구용적률 증가: 고산지대 순응, 골수 증양,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 등
- 5) 혈액 점성: 적혈구용적률이 증가하면 혈액 점성 증가함

11. 헨레고리 상행지에서 물질의 재흡수

- 1) 헨레고리 상행지: 물의 재흡수 없음
- 2) 헨레고리 상행지 상피세포 기저막쪽 세포막: Na^+ - K^+ ATPase(1차 능동수송 펌프)

11. 여과되고 분비되는 물질의 여과, 분비, 배설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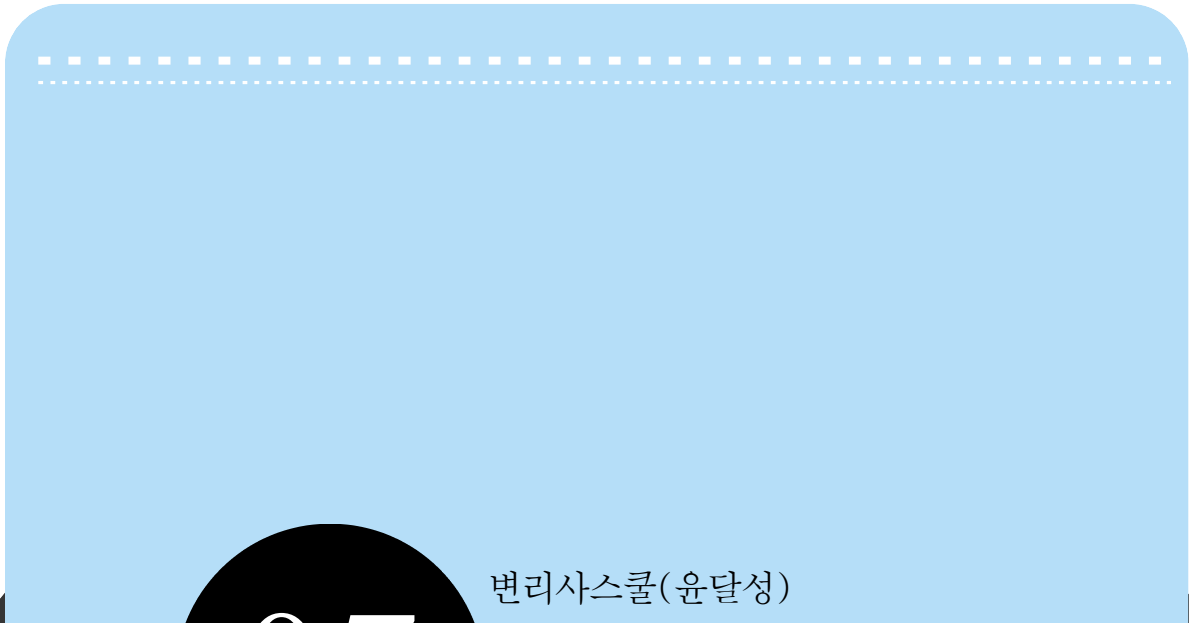
- 1) 여과의 특성: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리적 현상, 여과율은 포화되지 않음
- 2) 분비의 특성: 막 수송체에 의해 일어나는 능동수송, 분비율은 포화됨
- 3) 여과되고 분비되는 물질은 '배설률 = 여과율 + 분비율'을 만족함
 - 이 식을 만족하는 물질은 재흡수 일어나지 않음
- 4) 여과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구체 정수압, 보우만주머니 정수압, 사구체 교질삼투압 등
 - 수입세동맥 저항 증가 → 사구체혈류량 감소 → 사구체정수압 감소 → 여과율 감소

12.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 갑상샘 질환의 진단

- 1)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 여포세포가 혈장의 I^- 를 흡수 → 여포세포가 I^- 와 갑상샘글로불린을 여포로 방출 → 여포 내강에서 T_3 와 T_4 합성
- 2) 갑상샘은 T_3 보다 T_4 를 4배 더 많이 분비함
- 3) 갑상샘기능항진증: ^{123}I 혈액투여 시 갑상샘의 ^{123}I 흡수율이 정상인보다 높음
- 4) 갑상샘기능저하증: ^{123}I 혈액투여 시 갑상샘의 ^{123}I 흡수율이 정상인보다 낮음
- 5) 여포세포에서 I^- 의 흡수가 차단되면 음성되먹임 역제가 일어나지 못해 TSH 분비가 증가하여 갑상선종 발생함

13. 혈중 Ca^{2+} 농도 조절하는 호르몬

- 1) 부갑상샘호르몬(PTH): 뼈의 파골세포 자극, 신장에서 Ca^{2+} 의 재흡수 촉진, 신장에서 비타민D 활성화 촉진
- 2) 활성 비타민D의 기능: 소장에서 Ca^{2+} 의 흡수 촉진, 뼈의 파골세포 자극, 신장에서 Ca^{2+} 의 재흡수 촉진
- 3) 칼시토닌: 뼈의 파골세포 억제, 신장에서 Ca^{2+} 의 재흡수 억제
- 4) 부갑상샘호르몬은 펩티드 호르몬임
- 5)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전구체로부터 합성됨



제 07 절

변리사스쿨(윤달성)

지구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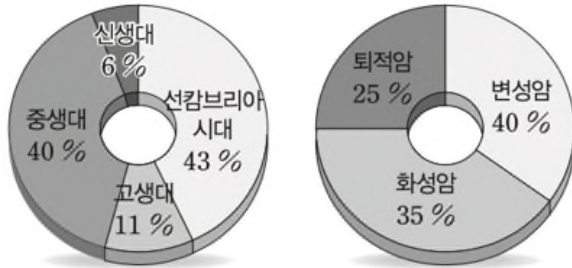
1.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만유인력과 표준 중력이 이루는 각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2. 음파는 종파이다.
3. 원시 태양과 가까운 영역에는 응결 온도가 높은 물질들이 응축하여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4. 같은 온도의 바닷물은 수돗물보다 밀도가 크다.
5. Si:O의 비율과 공유 산소의 수는 다르다.
6. 다색성이 관찰되는 조건은 개방 니콜과 유색 광물 두가지 이다.
7. 흑연은 1방향 쪼개짐이 나타난다.
8. 정마그마 광상 : 자철석
9. 페그마타이트 광상 : 석영, 장석, 운모, 희유 광물, 보석광물, 철, 텅스텐, 금
10. 기성 광상 : 망가니즈, 텅스텐
11. 열수 광상 : 금, 은, 구리
12. 표사 광상 : 금, 금강석
13. 풍화 잔류 광상 : 고령토, 보크사이트
14. 침전 광상 : 암염, 호상 철광층
15. 광역 변성 광상 : 흑연, 활석, 석면
16. 접촉 교대 광상 : 구리, 텅스텐
17. 철광상은 대부분 화성 광상이 아닌 퇴적 광상으로 만들어진다.
18. 활석은 규산염 광물이다.
19. 희토류는 농축 되어있지 않다.
20.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단계의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기 쉽다.
21. 호상 철광층은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22. 호상 철광층에서의 철 함유량은 회색인 부분에서가 더 많다.
23. 금속은 광역 변성 광상보다 접촉 교대광상에서 많이 산출된다.
24. 석고는 암석이 침전 작용을 받아서 형성되는 광물 자원이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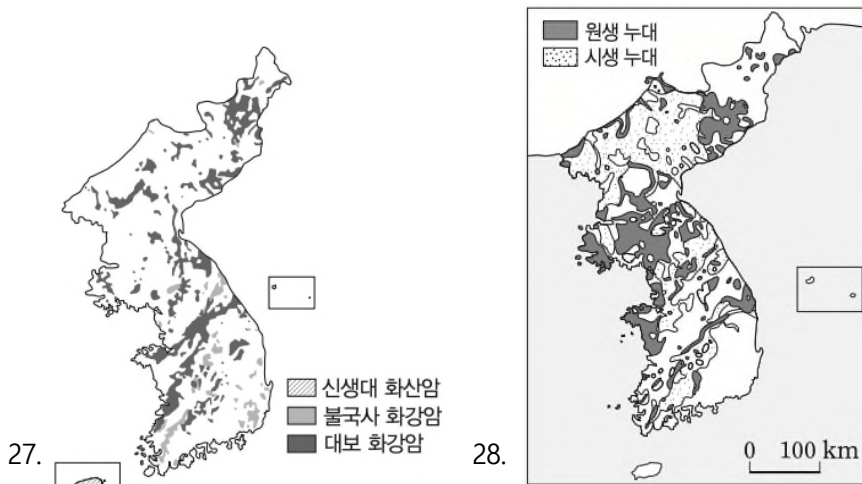
한반도의 지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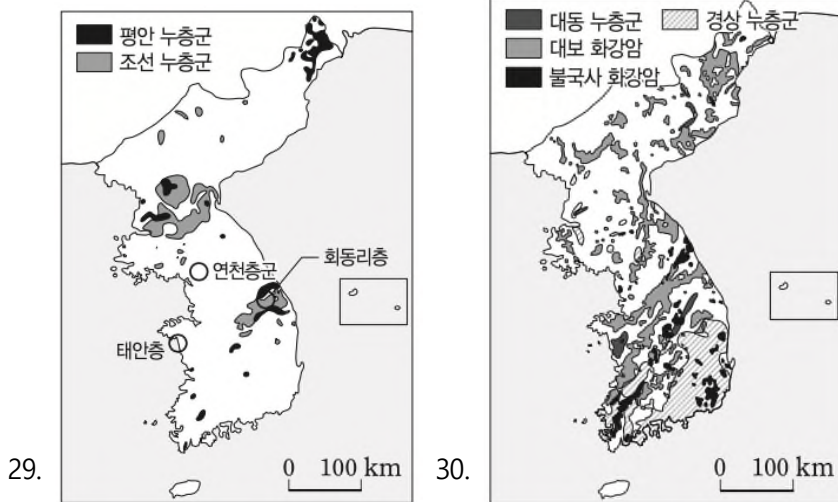
26.

지질 시대별 암석 분포

종류별 암석 분포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31. 한중 지괴와 남중 지괴의 충돌로 송림 변동이 일어났다. (트라이아스기)
32. 한중 지괴와 남중 지괴가 합쳐지면서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났다. (쥐라기)
33. 고태평양판이 한반도 아래로 섭입되면서 불국사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백악기)
34. 약 2천 5백만년 전에 동해 형성
35. 약 450만년 전에 독도 및 울릉도 형성
36. 혼펠스와 입상 변정질 조직에는 방향성이 없다.
37. 회동리층은 강원도 정선 부근에서 소규모로 발견된다.
38. 동해에는 대륙 사면이 발달해 있다.
39. 규암과 대리암은 접촉 변성 작용과 광역 변성 작용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40. 건조인 지역은 기조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조력이 지구 내부를 향하기 때문이다.

41. 기조력 $\propto \frac{M}{r^3}$
42. 염분은 난류가 한류보다 높다.
43. 내륙 평지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주로 복사 안개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아 지표의 복사 냉각이 클 때 생성된다.
44. 상대습도 = $\frac{\text{이슬점의 수증기압}}{\text{포화수증기압}} \times 100(\%)$
45. 구심력 = $\frac{mv^2}{r}$
46. 미규모 : 난류
47. 중간 규모 : 토네이도, 해륙풍, 산곡풍, 뇌우
48. 중관 규모 : 대기 대순환, 편서풍 파동
49. 날씨가 맑을 때, 대기 순환이 잘 일어난다.
50. 난류는 대기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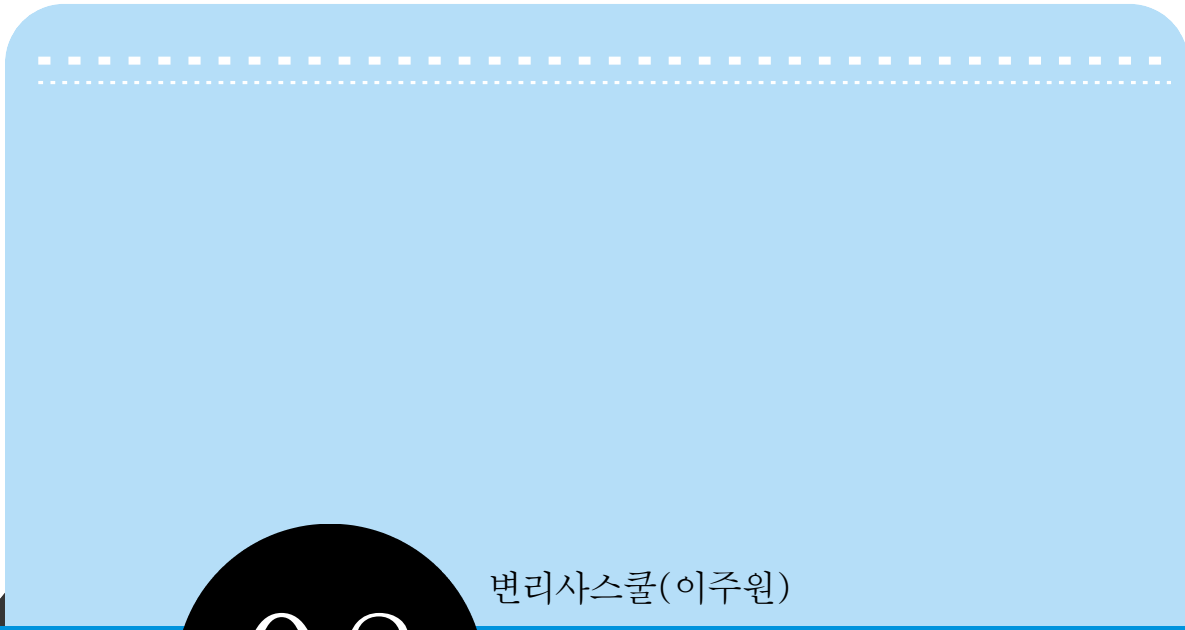
51. 해들리 순환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강하다.
52. 남북 방향의 온도 차이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크다.
53. 동일한 천체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고위도일수록 길다.
54. 산개 성단 : 수백~수천 개의 별
55. 구상 성단 : 수만~수십만 개의 별
56. 헤일로에는 주로 구상 성단이 분포한다.
57. 한반도 고생대 대리암은 고생대 석회암이 중생대의 지각 변동에 의해 변성 작용을 받은 것이다.
58. 육천 분지도 변성작용을 받을 것 일뿐 퇴적 분지이다.
59. 지구의 중심에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아 기조력의 크기가 0이다.
60. 계절에 따른 위치 변동은 열대 제트류보다 한대 전선 제트류가 더 크다.
61. 네오기와 제 4기에는 유공충 화석이 발견된다.
62. 육괴에는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63. 전향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만 변화시킬 뿐 이동 속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4. 사장석은 무색 광물이다.
65. 심해파가 해저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최소 깊이는 파장의 절반이다.
66. 해양에서는 해양지각의 밀도와 맨틀과 가깝기 때문에 대륙보다 평균적인 중력 이상이 크다.
67. 평균 열대 수렴대 위치는 북반구에 있다.
68. 목성의 회합 주기는 약 400일(14개월)이다.
69. 남중 시각은 태양과의 적경 차이를 통해 비교한다.
70. 적경 증가량
 - a) 외합 부근 내행성 : 내행성 > 태양

b) 합 부근 외행성 : 외행성 < 태양

71. 지구과의 최대 거리가 지구의 장반경의 두배 거리인 2AU를 기준으로 멀고 가깝고를 비교하여 외행성과 내행성을 비교할 수 있다.
72. 쌍성계에서 두 항성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각각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와 같다.
93. 거리 지수 차이가 m 일 때, 거리는 $10^{\frac{m}{5}}$ 배
73. 거대 분자운 영역은 주로 은하 원반에 위치한다.
74. 파장이 길수록 성간 소광 영향을 덜 받는다.
75. 태양은 우리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8.5kpc 떨어져있다.
76. 표준 중력은 항상 위도가 기준이다.
77. 관측소 주변의 날씨가 맑을 때 = 고기압일 때, 해륙풍 및 산곡풍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78. 외행성 중 천구 상에서 많이 이동한 행성이 적경 증가량은 작고, 공전 속도는 빠르다.
79.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중력가속도
80. 단위 부피당 연직 수압 경도력 \propto 밀도
81. 공기 덩어리의 연직 수압 경도력 = 무게
82. 기온 감률 구할 때, 높이 변화량 확인하기
83. 심해파의 속력이 주어지지 않을 때 주기를 구하는 방법 :
- $$\text{주기} = \frac{\text{파장}}{\text{속력}}, \text{속력} \propto \sqrt{\text{파장}} \rightarrow \text{주기} \propto \sqrt{\text{파장}}$$
84. 감람석, 휘석, 각섬석 등은 SiO₄ 사면체 기본으로 하여 SiO₄ 사면체가 마그네슘, 철 등의 이온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광물이다.
85. 연일층군에서도 응회암이 발견된다. 즉, 네오기 때에도 화산 활동이 있었다.
86. 구름 두께 100m당 기온은 0.5°C 증가하고 이슬점은 0.3°C 감소한다.
87. 천체를 육안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평선 위에 떠있어야함과 동시에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져야한다.
88. 심해파의 속도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주기와 착각하지 말기
89. 경기 육괴는 선캄브리아의 변성암체이다.
90. 외행성과 항성은 매일 남중 시각이 빨라진다는 것이 문제 풀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91. A와 B의 차는 절댓값이다. A에서 B를 뺀다는 말이 아니다.
92. 계절 변화가 큰 지역은 해양 온도차 발전의 연중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
93. 공기덩어리의 수증기압은 이슬점이다. 포화 수증기압인 온도와 혼동하지 않기
94. 경사 방향과 주향 방향 혼동하지 않기
95. 우리나라에는 신생대 화성암보다 중생대 화성암이 더 많이 분포한다.
96. 원궤도로 공전하는 천체의 시선 속도 최댓값은 그 천체의 공전 속도와 같다.

97. 편서풍 파동이 더 발달할수록 남북 간의 열 수송량이 더 많다.
98. 연주시차는 거리와 반비례한다.
99. 경사방향이 서로 반대인 해역에서 해수면의 기울기와 밀도경계선의 기울기의 비는 같다. (A와 B의 해수면 기울기 비가 1 : 2 이면 밀도경계선의 기울기 비도 1 : 2이다.)
100. 중성 수소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을 때 에너지가 더 높다.
101. 역전층은 지표의 공기가 냉각되어 생긴다.
102. 해수면 및 대기의 단면을 주고 유향 및 풍향을 찾을 때에는 방위를 꼭 확인한다.
103. 희토류는 제련 과정이 필요하다.
104. 대기 중에서 질소의 비율은 이산화탄소가 침전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산소의 형성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05. 주계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절대등급과 색지수가 작다.
106. 심해파/천해파 문제에서는 그래프에서 일정한 부분의 특징을 잘 살펴본다.
107.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에서 내행성의 주전원 중심은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분 위에 있다.
108. 행성의 위치는 남중하는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9. 우리나라 지체 구조 중 육괴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졌다.
110. 태백산 분지와 옥천 분지는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111. 파고는 진폭의 두 배이다.
112. 방해석은 탄산염 광물이다. 규산염 광물에 낚이지 않기
113. 금성은 최대 이각과 내합 사이에서 가장 밝다.
114. 나무토막의 밑면적이 다르면 쌓아 올렸을때 단순히 $\rho \times h$ 로 밀도를 구할 수 없다. 질량으로 표현해 밑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구해야한다.
115. 제트류는 여름보다 겨울일 때 속력이 더 강하다.
116. 북반구에서 저기압이면 해수는 발산한다.
117. 해파의 주기가 일정하면 심해파에서는 파장도 일정하다.
118. 심해파가 수심이 얇은 곳으로 진행하더라도 파장 및 주기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속력은 같다.
119. 프래트설은 지각의 밀도가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등압면의 압력을 구할 때 공통 높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안 된다.
120. P파의 평균 속도 : 맨틀 > 내핵 > 외핵
121. 적경의 변화량이 큰 행성일수록 회합주기가 짧다.
122. P파와 S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같은 지점이 지진의 발생 장소이다.
123. 두 제트류 사이의 거리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크다. 아열대 제트류의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한대 제트류의 위치가 겨울철에 남하하기 때문이다.
124. 불투명 광물은 개방/직교 니콜 모두에서 어둡고, 등방체 광물은 직교 니콜에서만 어둡다.
125. 회합 주기가 짧을수록(공전 각속도 차이가 클수록) 천구 상에서 위치 변화가 크다.

126. 외행성의 위치 관계를 지구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관찰할 때는, 실제 공전 속도를 반영하면 안되고, 회합 주기에 맞춰 그려야 한다.
127. 구성 은하 중 나선 은하의 비율은 국부 은하군이 처녀자리 은하단보다 작다.
128.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에서 태양은 시계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129. 성간 티끌은 별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을 방출한다.
130. 석고는 침전 광상에서 산출된다.
131. 타원궤도에서 행성이 한바퀴 공전하는 동안 별과 행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타원의 장반경과 같다.
132.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풍파는 천해파와 심해파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심해파가 해변 가까이 오면 천해파로 바뀐 후 결국 깨어지게 된다. 이러한 파는 대부분 6~12초 주기이며, 이 때 파의 주기를 변하지 않는다. 천해로 진행되면서 파속, 파고 그리고 파장은 변할 수 있지만 파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133.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커져 지구의 공전 속도는 빨라지지만 태양에 의한 기조력에 의해 자전 속도는 느려진다.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원심력의 크기가 감소하므로 적도 지역의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134. 적철석은 호상 철광층에서 산출된다.
135. 알루미늄은 전선의 원료로 쓰인다.
136. 망가니즈 단괴는 주로 퇴적 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심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퇴적 작용이 활발한 환경에서는 해수 속에 녹아있던 망가니즈, 구리, 코발트 등의 금속 성분이 암석 표면에 들러붙어 자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퇴적물에 파묻히기 때문이다. 가스 수화물은 유기물의 공급이 활발한 육지 근처 바다나 영구 동토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137. 암염은 광학적 등방체이다.
138. 빙하가 녹아 지각이 융기하면 새로운 자리에 맨틀이 차오르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중력 가속도는 증가한다.
139. 지질도를 그릴 때, 지표면의 경사와 퇴적층의 경사를 비교해서 그려야 한다.
140. 해양 온도 차 발전 방식은 냉매를 응결 및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체의 흐름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파력 발전은 파도에 의한 공기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모두 포함한다.
141. 암영대는 맨틀과 외핵의 상태가 달라 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져 나타난다. 따라서 지구 내부 물질의 밀도가 균일하다면 지금보다 줄어든 것이다.
142. 혼합조가 나타나는 범위에서 연속되는 만조~간조, 간조~만조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143. 거리 지수 구할 때 (음수-음수)상황은 조심하자!
144. 성단에서 태양보다 색지수가 작은 주계열성이 남아있으면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성단이다.
145. 교차거리 \propto 지각의 두께



변리사스쿨(이주원)

제 08 권

물리



1. 속도와 가속도

●속도: $\vec{v} = \frac{d\vec{x}}{dt}$ (m/s)

●상대 속도: $v_{ab} = v_b - v_a$

●가속도: $\vec{a} = \frac{d\vec{v}}{dt}$ (m/s²)

●등가속도 운동: v-t 그래프 해석하고 (기울기→ 가속도, 면적→ 이동거리)

공식 사용하면 다 풀린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v = v_0 + at$, $s = v_0t + \frac{1}{2}at^2$ $v^2 - v_0^2 = 2as$

2. 운동 방정식

●뉴턴의 2법칙: $\sum F = ma$

●힘의 종류

1) 중력: $g=9.8\text{m/s}^2$ $F=mg$

2) 수직 항력: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3) 탄성력: $F=-kx$

4) 장력: 같은 줄의 장력은 모든 곳에서 같다.

5) 마찰력: $f_s = \mu_s \cdot N$ (정지 마찰력) $f_k = \mu_k \cdot N$ (운동 마찰력)

●뉴턴의 제 3법칙(작용 반작용의 법칙): 주어 목적이 바뀌서 일치하면 작용 반작용 일치하지 않으면 힘의 평형 관계이다.

3. 2차원 운동

●포물선 운동

x성분 y성분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성분: 등속도 운동

y 성분: $a=-g$ 인 등가속도 운동

$v_{x0}=v_0\cos\theta$, $v_{y0}=v_0\sin\theta$ $v^2 = v_x^2 + v_y^2$

최고점 도달 시간: $t = \frac{v_0\sin\theta}{g}$

운동 시간: $2t = \frac{2v_0 \sin \theta}{g}$

수평 도달 거리: $R = \frac{v_0^2 \sin 2\theta}{g}$

최고점 높이: $H = \frac{(v_0 \sin \theta)^2}{2g}$

4. 일과 에너지

● 일: $W = \vec{F} \cdot \vec{s} = F \cdot s \cdot \cos \theta$

● 일률: $P = \frac{dW}{dt} = \frac{F ds}{dt} = F \cdot \frac{ds}{dt} = F \cdot v$

● 일-에너지 정리: $\Delta E = -W$

● 운동 에너지: $E_k = \frac{1}{2}mv^2$ (J)

● 위치 퍼텐셜: $E_p = mgh$

● 탄성 퍼텐셜: $\Delta E_{\text{탄성}} = \frac{1}{2}k\Delta x^2$

●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외력이 없다면!! $\rightarrow \Delta E_k + \Delta E_p + \Delta E_{\text{탄성}} = 0$

5. 선운동량

● 선운동량: $p = mv$ ($kg \cdot m/s^2$)

● 운동량 변화: $\Delta p = mv - mv_0 = m\Delta v$

● 운동량 보존의 법칙: $\Delta p = 0, p_1 = p_2$

● 힘과 운동량의 관계: $F = ma = m \frac{dv}{dt} = \frac{dp}{dt}$

●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E_k = \frac{1}{2}mv^2 = \frac{(mv)^2}{2m} = \frac{p^2}{2m}$

6. 회전운동

● 선운동과의 관계: $v = r \cdot \omega, a = r \cdot \alpha$

● 등각속도 운동 공식: $\alpha = a, \omega = v, \theta = s$ 를 치환!!

$2\alpha\theta = \omega^2 - \omega_0^2, \omega = \omega_0 + \alpha t, \theta = \omega_0 t + \frac{1}{2}\alpha t^2$

● 질량 중심: $x_{cm} = \frac{\sum m \cdot x}{\sum m}$

- 관성 모멘트: $I = \int r^2 dm$
- 질점의 관성 모멘트: $I = mr^2$
- 고리의 관성 모멘트: $I = Mr^2$
- 원판(원기둥)의 관성 모멘트: $I = \frac{1}{2}Mr^2$
- 구의 관성 모멘트: $I = \frac{2}{5}Mr^2$

7. 회전운동 방정식

- 토크: $\vec{\tau} = \vec{r} \times \vec{F} = Fr \sin\theta$
- 토크를 포함한 운동 방정식
병진: $\sum F = ma$ 회전: $\sum \tau = I\alpha$
- 회전 운동 에너지: $E_{\text{회전}} = \frac{1}{2}I\omega^2$
- 에너지 보존 법칙: 외력이 없다면!! $\rightarrow mgh + \frac{1}{2}I\omega^2 + \frac{1}{2}mv^2 = \text{constant}$
- 일 에너지 정리(부호 생략): $\Delta E = W = W_{\text{병진}} + W_{\text{회전}} = Fs + \tau\theta$
- 유연한 굴림 운동(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운동): $v_{\text{cm}} = r\omega$
- 유연한 굴림 운동과 마찰력: 마찰력은 존재하나 마찰력이 한 일은 없다

8. 유체역학

- 밀도: $\rho = \frac{m}{V}$
- 압력: $P = \frac{F}{A}$ (pa)
- 높이 h인 곳에서 압력: $P = P_0 + \rho gh$
- 부력: $F_{\text{부력}} = m_{\text{유체}}g = \rho_{\text{유체}}gV_{\text{잠김}}$
- 부력과 평형인 중력: $F = m_{\text{물체}}g = \rho_{\text{물체}}gV_{\text{물체}}$
- 연속 방정식: $A_1v_1 = A_2v_2$
- 베르누이 방정식: $P_1 + \frac{1}{2}\rho v_1^2 + \rho gh_1 = P_2 + \frac{1}{2}\rho v_2^2 + \rho gh_2$

9. 열역학 기초

- 물수: $n = \frac{w}{M}$ (mol)
- 온도와 운동 에너지 관계: $\frac{1}{2}m\bar{v}^2 = \frac{3}{2}kT$
-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v_{rms} = \sqrt{\frac{3RT}{M}}$
-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 = nRT$
- 비열: $Q = c_m m \Delta T = c_n n \Delta T$
- 정적 비열 일반: $q_v = C_v \Delta T$
- 정적 비열 값: 단원자 분자의 $C_v = \frac{3}{2}R$
이원자 분자의 $C_v = \frac{5}{2}R$
다원자 분자의 $C_v = 3R$
- 정압 비열: $q_p = C_p \Delta T$
-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관계(이상 기체): $C_p = C_v + R$
- 열 전도 법칙: $\dot{Q} = \frac{dQ}{dt} = -kA \frac{\Delta T}{L}$ (W)
- 내부 에너지: $\Delta U = n \cdot C_v \Delta T$
- 엔탈피: $\Delta H = n \cdot C_p \Delta T$
- 일: $dW = P_{ex} dV$

10. 열역학 1법칙

- 열역학 1법칙: $\Delta U = Q_{in} - Q_{out} + W_{in} - W_{out}$,
- 열역학 1법칙(부호 규약 준수): $\Delta U = Q - W$
- 등온 과정: $\Delta T = 0 \rightarrow \Delta U = 0$

$$Q = W = \int P dV = nRT \int \frac{dV}{V} = nRT \cdot \ln\left(\frac{V_2}{V_1}\right)$$

- 등적 과정: $\Delta V = 0 \rightarrow W = 0$

$$\Delta U = Q = n \cdot C_v \Delta T$$

- 단열 과정: $Q = 0$

$$\Delta U = -W$$

- 정압 과정: $\Delta U = Q - W$ $\Delta H = Q = n \cdot C_p \Delta T$,

$$W = \int P dV = P \int dV = P \Delta V$$

●상 변화 과정: $Q = \Delta H$

→ $Q = \Delta H_{기화}$

→ $Q = \Delta H_{승화}$

→ $Q = \Delta H_{용해}$

11. 열역학 2법칙

●열역학 2법칙(밀폐계): $dS = \frac{dQ}{T} + S_{gen}, \quad S_{gen} \geq 0$

●가역 과정: $S_{gen} = 0, \quad dS = \frac{dQ}{T}$

●엔트로피 변화(부피 주어진 경우): $\Delta S = nC_v \ln\left(\frac{T_2}{T_1}\right) + nR\left(\frac{V_2}{V_1}\right)$

●엔트로피 변화(압력 주어진 경우): $\Delta S = nC_p \ln\left(\frac{T_2}{T_1}\right) - nR\left(\frac{P_2}{P_1}\right)$

●열효율: $\eta = \frac{\text{output}}{\text{input}} = \frac{W}{Q_H} = \frac{Q_H - Q_L}{Q_H} = 1 - \frac{Q_L}{Q_H}$

●카르노 기관 열효율: $\frac{Q_L}{Q_H} = \frac{T_L}{T_H}, \quad \eta_{rev} = \frac{W}{Q_H} = 1 - \frac{Q_L}{Q_H} = 1 - \frac{T_L}{T_H}$

12. 파동

●전파 속도: $v = f\lambda$

●스넬의 법칙: $\frac{\sin\theta_2}{\sin\theta_1} = \frac{v_2}{v_1} = \frac{\lambda_2}{\lambda_1} = \frac{n_1}{n_2}, \quad f \text{ 는 동일}$

●회절 무늬 간격: $\Delta x = \frac{l\lambda}{w}$

●간섭 무늬 간격: $\Delta x = \frac{l\lambda}{d}$

●경로차(위상이 같은 경우):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 배($0, \lambda, 2\lambda, 3\lambda \dots$)이면 보강간섭이

반파장의 홀수 배($\frac{1}{2}\lambda, \frac{3}{2}\lambda, \frac{5}{2}\lambda \dots$)이면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자유단 반사: 밀한 매질 → 소한 매질로 진행하다 반사: 위상 변화 없다.

●고정단 반사: 소한 매질 → 밀한 매질로 진행하다 반사: 위상 변화 π .

●간섭 조건($n_1 < n_2 < n_3$): 보강 간섭: $\Delta = 2nd = 0, \lambda, 2\lambda, 3\lambda \dots$

상쇄 간섭: $\Delta = 2nd = \frac{1}{2}\lambda, \frac{3}{2}\lambda, \frac{5}{2}\lambda \dots$

●간섭 조건($n_1 < n_2 > n_3$): 상쇄 간섭: $\Delta = 2nd = 0, \lambda, 2\lambda, 3\lambda \dots$

보강 간섭: $\Delta = 2nd = \frac{1}{2}\lambda, \frac{3}{2}\lambda, \frac{5}{2}\lambda \dots$

● 두 장의 평면 유리 간섭 무늬 간격: $\Delta x = \frac{\lambda}{2n \tan \theta}$

13. 음파

● 정상파(양 끝이 닫힌 관): $\lambda_n = \frac{2L}{n}$

● 정상파(양 끝이 열린 관): $\lambda_n = \frac{2L}{n}$

● 정상파(한 끝이 닫힌 관): $\lambda_n = \frac{4L}{2n-1}$

● 줄에서 파동의 속도: $v = \sqrt{\frac{T}{\mu}} = f\lambda$

● 맥놀이: $f_{\text{맥놀이}} = f_1 - f_2$

● 도플러 효과(가까워 질 때 기준): $f' = f \frac{v+v_d}{v-v_s}$

14. 광학(거울과 렌즈)

● 거울 렌즈 공식:

$$\frac{1}{a} + \frac{1}{b} = \frac{1}{f}$$

물리량	(+)인 경우	(-)인 경우
a	실물체	허물체
b	실상	허상
f	실초점	허초점

● 상의 배율: $m = -\frac{b}{a}$ $m > 0$ 면 직립상 $m < 0$ 면 도립상

● 구면 렌즈 초점 거리: $R = 2f$

15. 정전기

● 쿨롱의 법칙: $F = k \frac{q_1 q_2}{r^2} = \frac{1}{4\pi\epsilon_0} \frac{q_1 q_2}{r^2}$

● 전기장과 전기력: $F = qE$

● 전기선속: $\phi = \int E dA$

● 가우스 법칙: $\phi = \int E dA = \frac{q_{in}}{\epsilon_0}$

● 점전하 전기장 $E = \frac{1}{4\pi\epsilon_0} \frac{q}{r^2}$

- 길이 L인 도선 전기장: $E = \frac{\lambda}{2\pi\epsilon_0 r}$
- 평면 전기장: $E = \frac{\sigma}{2\epsilon_0}$
- 도체 전기장: $E = \frac{1}{4\pi\epsilon_0} \frac{q}{r^2}$ ($r \geq R$) $E = 0$ ($r < R$)
- 평행판 축전기 전기장: $E = \frac{\sigma}{\epsilon_0}$
- 전기 퍼텐셜: $U = k \frac{q_1 q_2}{r}$
- 전위: $\Delta V = - \int E dl$
- 전위와 전기 퍼텐셜: $U = q\Delta V$
- 전점하 전위: $V = k \frac{q}{r}$

16. 직류회로

- 전류와 전하량: $Q = It$
- 옴의 법칙: $V = IR$
- 저항의 크기: $R = \rho \frac{l}{A}$
- 합성 저항(직렬): $\sum R = R_1 + R_2$
- 합성 저항(병렬): $\frac{1}{\sum R} = \frac{1}{R_1} + \frac{1}{R_2}$
- 전기 에너지: $W = qV = VIt = I^2 Rt = \frac{V^2}{R} t$
- 소비 전력: $P = \frac{W}{t} = VI = I^2 R = \frac{V^2}{R}$ (단위 W)
- 키르히호프 전류 법칙: 분기점에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 키르히호프 전압 법칙: 고리를 돌릴 때 전위차는 $V=0$ 이다.

17. 축전기

- 축전기 전하량: $Q = CV$
- 전기 용량 크기: $C = \epsilon \frac{A}{d}$
- 유전 상수: $k = \frac{\epsilon}{\epsilon_0}$
-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W = \frac{1}{2} QV = \frac{1}{2} CV^2 = \frac{Q^2}{2C}$ (J)
- 축전기의 연결(직렬): $\frac{1}{C} = \frac{1}{C_1} + \frac{1}{C_2}$

● 축전기의 연결(병렬) $C = C_1 + C_2$

● 구형 축전기 전기 용량: $C = \frac{4\pi\epsilon_0 ab}{b-a}$

18. 자기장

● 자기 선속: $\Phi = BA \text{ (Wb)}$

● 직선 도선의 자기장: $B = k \frac{I}{d} = \frac{\mu_0 I}{2\pi d} \text{ (T)}$

● 원형 도선의 자기장: $B = k \frac{I}{d} = \frac{\mu_0 I}{2d} \text{ (T)}$

●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B = k n I = k \frac{N}{l} I = \mu_0 n I \text{ (T)}$

19. 자기력

● 도선이 받는 자기력: $F = BIl$

●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 $F = BIl = k \frac{I_1 I_2}{r} l = \frac{\mu_0 I_1 I_2}{2\pi r} l$

● 전하의 자기력: $F = qvB \sin\theta = qvB$

● 자기장 하에서의 운동

원운동 반경: $qvB = \frac{mv^2}{r} \quad r = \frac{mv}{qB}$

원운동 주기: $T = \frac{2\pi r}{v} = \frac{2\pi m}{qB}$

원운동 가속도: $a = \frac{qvB}{m}$

● 속도 선택기: $qE = qvB \quad v = \frac{E}{B}$

● 질량 분석기 속도, 반지름: $v = \frac{E}{B_1} \quad r = \frac{mE}{qB_1 B_2}$

● 자기 모멘트: $\mu = nIA$

20. 전자기 유도

● 페러데이 법칙: $\mathcal{V} = -N \frac{d\Phi}{dt}$

● 도선의 유도 기전력: $\mathcal{V} = -N \frac{d\Phi}{dt} = \frac{d(BA)}{dt} = \frac{Bd(A)}{dt} = Blv$

● 도선의 자기력: $F = BIl = \frac{B\mathcal{V}}{R} = \frac{B^2 l^2 v}{R}$

● 도선의 소비 전력: $P = Fv = \mathcal{V}I = \frac{B^2 l^2 v^2}{R}$

21. RLC회로-직류

●R-C 회로

t=0 일 때: $V_{저항} = IR \quad I = \frac{V}{R}$

t=∞ 일 때: $V_{저항} = IR = 0 \quad Q = CV_{충전기}$

시상수: $\tau = RC$

●R-L 회로

t=0 일 때: $V_{저항} = IR = 0$

t=∞ 일 때: $V_{저항} = V = \frac{I}{R}$

시상수: $\tau = \frac{L}{R}$

●인덕터의 에너지: $E = \frac{1}{2}LI^2$

	전류	$V_{저항}$	$V_{인덕터}$
충전 시작 t=0	$I = 0$	$V_{저항} = 0$	$V_{인덕터} = V$
충전 완료 t=∞	$I = \frac{V}{R}$	$V_{저항} = V$	$V_{인덕터} = 0$

22. 교류 회로

●실효값: $V_e = \frac{1}{\sqrt{2}}V_0 \quad I_e = \frac{1}{\sqrt{2}}I_0 \quad P_e = V_e I_e = \frac{1}{2}P_0$

●리액턴스: $X_L = \omega L \quad X_C = \frac{1}{\omega c}$

●인피던스: $Z = \sqrt{R^2 + (X_L - X_C)^2}$

●전압: $V = \sqrt{V_R^2 + (V_L - V_C)^2}$

$V_R = IR \quad V_L = IX_L \quad V_C = IX_C$

$V = IZ$

●공명 각진동수: $\omega = \frac{1}{\sqrt{LC}} = \omega_0$

●공명 진동수: $\omega = 2\pi f, \quad f = \frac{1}{2\pi\sqrt{LC}}$

2022년 ~
2023년 대비

변리사스쿨

종합반 모집 중

1

2023년 대비
1차종합반

2

2022년 대비
동차종합반

- 민특상 종합반
- 특상종합반

변리사스쿨

역삼역 4번 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5-4, 1-2층(역삼동)

홈페이지 문의 www.patentschool.co.kr

카톡 문의 pf.kakao.com/_xjvNcK

종합반상담 / 문의

02-566-9600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시험 합격

변리사스쿨 1차 종합반 제6기 모집



학원가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

조기 등록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2022년 3월 현장강의 개강 전 조기 등록
하신 분들께 변리사스쿨 1차 인강 사전 제공

혜택 1

**합격가능성
극대화 시스템**
(1차, 2차 강의 제공)

혜택 2

**24시 프리미엄
독서실 무료**

혜택 3

**현직 변리사
조별/개별
밀착관리**

1. 모집대상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모집일정

(1) 모집기간

2021년 12월 27일 ~ 2022년 2월 28일

(2) 종합반 설명회 진행(온/오프라인)

① 오프라인 설명회(무료)

- 2022년 1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변리사스쿨에서 진행
- 현직 변리사와 종합반 상담 가능

② 온라인 설명회(무료)

- 오프라인 설명회를 촬영하여,
온라인 설명회로 업로드 됩니다. (2022년 1월 10일)

3. 합격을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

합격가능성 극대화 시스템

전과목 기본이론 단기간에 정복(3月 ~ 6月)

→ 2차시험 선행학습가능

출제위원/ 채점위원

출신의 교수님 특강

- 출제위원, 채점위원 경력을 다수보유한 교수님 특강
- 종합반 전용 비공개 Secret 과정
- 5회 내지 10회

2차시험

선행학습 과정

- 2023년 1차, 2차 동시합격을 위한 최고의 커리큘럼
- 2차시험 강의 제공 (조현중 특허법, 김영남 상표법)

실강/인강

무제한 제공

시스템

- 실강, 인강 중복/반복 수강 가능
- 실강 참석 어려우신 분들은 인강으로만 수강하는 것도 가능

연간 커리큘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민법	기본강의			중급강의		객관식강의		OX강의		조문특강	진도별 모의고사
										최신판례	변호사 시험 기출 특강
특허법	기본강의		조문특강		판례강의		OX강의	기출강의	객관식 강의	심사기준	
										최종정리	
상표법		기본강의		중급강의 (핵심이론 정리)	진도별 기출	객관식 강의	판례강의		최종정리	취약파트 특강	
					조문특강						
디자인 보호법				기본강의	중급강의 (핵심 이론정리)	진도별 기출		객관식 강의	최종정리		
물리	기본강의		객관식 강의						최종정리		
화학		기본강의		테마특강 (고분자, 유기화학, 분광학)	객관식 강의				최종정리		
생물			기본강의		테마특강 (자과전 략분석, 코로나)	객관식 강의			최종정리		
지구과학				기본강의	객관식 강의				최종정리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월말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력추천

24시 프리미엄 독서실 (1년간 무료제공)

1. 최고급 럭셔리 공간

우리나라 전통 고전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집중력 향상

2. 24시간 독서실 운영을 원칙

3. 백색소음기 설치

공부집중력 극대화

4. 편의시설

커피머신, 제빙기, 휴게공간(실내, 실외)

5. 호텔식 화장실

- 비데설치
- 청소전문업체 매일 관리(스팀살균청소)
- 여자화장실 1인룸(독립적 사용 공간)

최첨단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 제한" 되는
변리사스쿨 종합반 전용 독서실



종합반 특별관리 프로그램

[조별/개별 밀착 관리]

1. 조별 스터디원 배정
2. 개인별 진도체크
3. 조별/ 개별 상담 진행
 - 현직 변리사, 강사진 등이 제공하는 직접상담 시스템
4. 실시간 1:1 질의응답가능
5. 출석체크 관리
 - 출석우수자 포상

[인(人)적 네트워크 구축]

1. 변리사스쿨 단체카톡
2. 1차 종합반 전체 단체 카톡
3. 1차 종합반 조별 단체 카톡
4. 현직 변리사/ 강사와의 개인 카톡

[모의고사로 중간 점검 및 보완]

- 22년 6월 ~ 23년 1월까지 매월 모의고사를 실시
→ 강사와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완벽보완

"변리사스쿨 모의고사 응시 인원수 압도적 1위"

과목별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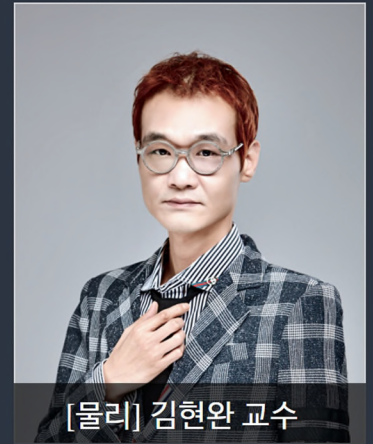
[민법] 류호권 교수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김영남 변리사



[물리] 김현완 교수



[화학] 김선민 교수



[생물] 김민 교수



[지구과학] 윤달성 교수



출제위원/채점위원
출신의 특강 교수님

"과목별 강사진" 이외의 강의는 종합반 특별우대로(50%~100% 할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학원접수 가능
- 등록금 **430만원** (3회 분납 - 143.3만원/143.3만원/143.4만원)

* 변리사스쿨 1차 종합반은 작년 종합반과 달리, "자연과학 전과정(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과, "교수님 특강"이 정규과정으로 포함이 되면서, 등록금이 작년 대비 8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변리사스쿨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들께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종합반 환불시 "독서실 이용료(월 25만), 종합반 관리비(월 30만), 기수강 강좌의 단과 수강료"가 공제됩니다.

PATENT
SCHOOL

변리사스쿨 동차종합반

(민소, 특허, 상표 종합반)

2022년 3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학원가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

**“민특상 종합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모두 포함된 과정입니다.**

등록금

온라인접수, 학원접수 가능

2,500,000

3회 분납 가능 (83.3만원/83.3만원/83.4만원)

모집대상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1) 모집기간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28일

(2) 종합반 설명회 진행

① 온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1월 25일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2월 23일 오후 4시부터

변리사스쿨 1층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

종합반 혜택

(1) 변리사스쿨 강의 무제한 수강

- 실강 및 인강 중복/반복 수강가능
- 동차종합반 등록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출제위원, 채점위원 출신 교수특강 (2~5회)

- 종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
- 2차 시험 채점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강의

(3) 2차 스터디 그룹 형성 및 지원

- 스터디 그룹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 및 긴장감 유지
- 2022년 10월 ~ 12월 매일쓰기(특허, 상표, 민소)

(4) 현직 변리사 직접 상담

- 개별상담: 상시진행
- 조별상담: 정기진행(종합반 모집 후 조율하여 결정)

(5) 변리사스쿨 프리미엄 자습실 제공

- 2차종합반전용강의실을 자습실로제공(빈강의실일때제공)
- 1인 1개의 사물함 제공
- 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6) 변리사스쿨 프리미엄 독서실 특별할인 (선택과정, 조기마감에 주의)

- 비용: 월20만원 -> 월10만원
- 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환불규정]

- 수강하신 강의에 대한 단과비용과 월 30만원(상담 등 기타 관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차감 된 후 환불됩니다.
- 프리미엄 독서실 이용자의 경우, 독서실 할인 받으신 금액이 추가로 차감 된 후 환불됩니다.

★ 동차합격과정[2022년 2월 ~ 7월] ★

1. 종합반 커리큘럼(2022년 2월 ~ 7월)

월	특허법(조현중)	상표법(김영남)	민사소송법(최영덕)
2월			기본강의(20회)
3월	기본강의(8회) 기초GS(8회)	기본강의(8회) 기초GS(8회)	사례강의(10회)
4월	기초GS(8회) 실전GS A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A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A형
5월	기초GS(8회) 실전GS B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B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B형
6월	실전GS A형 또는 B형(8회)	실전GS A형 또는 B형(8회)	실전GS A형 또는 B형(8회)
7월	자율 학습 및 멘토링(시험 막바지 슬럼프 방지, 정신력 관리)		

* 커리큘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커리큘럼상 모든 강의 실강 및 인강을 중복/반복 수강가능
 작년(2021년) 2차 특허법, 상표법 인강도 중복/반복 수강가능
 특허법과 상표법은 조현중·김영남 변리사 이외에 모든 강사의 2차강의 수강가능
 (특허법: 정진환 변리사, 박상보 변리사, 상표법: 이성규 변리사)
 변리사 2차시험일 이후에도 2022년 12월까지 지난 강의 반복/중복 수강가능

2. 종합반 전용_교수님 특강

- ▶ 출제위원급, 채점위원 경력을 다수보유한 교수님 특강
- ▶ 2회 내지 5회
- ▶ 종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

3. 종합반 전용_프리미엄 자습실 및 독서실 안내

(1) 프리미엄 자습실

- ▶ 변리사스쿨 별관에 위치
- ▶ 2차 종합반 전용 강의실
- ▶ 1인 1개의 사물함
- ▶ 22년 3월 ~ 2차시험일까지
- ▶ 24시간 운영원칙
- ▶ 추가비용 없음

(2) 프리미엄 독서실(조기 마감에 주의)

- ▶ 변리사스쿨 본관 2층에 위치
- ▶ 1인 1개의 사물함
- ▶ 종합반 특별할인 월 10만원(정가 20만원)
- ▶ 독서실은 선택과정, 프리미엄 자습실과 중복제공
- ▶ 22년 2월 2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 ▶ 24시간 운영 원칙

4. 종합반 전용_스터디 형성 및 관리

(1) 스터디 형성

- ▶ 5명 내외 스터디 형성(스터디 참석이 필수는 아님)
- ▶ 2차 종합반 OT(22년 2월 27일 오후 4시 예정)에서 결정
- ▶ 선택과목 고려

(2) 스터디 관리(조현중, 김영남 변리사 밀착지도)

- ▶ 스터디마다 성향에 맞추어 출책, 퇴책, 진도확인 등 체계화
- ▶ 매일쓰기 피드백 상담

5. 종합반 전용_개별상담 및 조별상담

- ▶ 개별상담은 신청에 따라 상시진행
- ▶ 개별상담은 신청이 없어도, 밀착지도가 필요한 경우 진행
- ▶ 조별상담은 정기적으로 진행(구체적 일정은 스터디 형성 후 결정)

동차 시험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책임진다

기득합격과정[2022년 8월 ~ 12월]

1. 종합반 커리큘럼(2022년 8월 ~ 12월)

월	특허법(조현중)	상표법(김영남)	민사소송법(최영덕)
8월	1차시험 이후 멘토링(기득을 위한 수험계획 상담 등)		
9월	판례심화강의(8회)	판례심화강의(10회)	민소심화강의(20회)
10월	사례강의(8회)	사례강의(8회)	진도별 기출강의(12회)
11월	기출강의(6회)	기출강의(6회)	

* 커리큘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강의에 대한 실강 및 인강을 중복/반복 수강가능
- ▷ 특허법과 상표법은 조현중·김영남 변리사 이외에 모든 강사의 2차강의도 수강가능

2. 매일쓰기 지원(2022년 10월 ~ 12월)

과목	횟수	기간
※ 담임: 김영남 변리사	주5회	2022년 10월~2022년 12월

1단계	목표: 11월	2단계
1시간쓰기 50점분량	실력향상시 업그레이드	2시간쓰기 100점분량

PATENT
SCHOOL

변리사스쿨 동차종합반

(특허, 상표 종합반)

2022년 3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학원가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

**"특상 종합반"은 특허법, 상표법이
포함된 과정입니다.**

등록금

온라인접수, 학원접수 가능

2,000,000

3회 분납 가능 (66.6만원/66.6만원/66.7만원)

모집대상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1) 모집기간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28일

(2) 종합반 설명회 진행

① 온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1월 25일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설명회(무료)

2022년 2월 23일 오후 4시부터

변리사스쿨 1층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

종합반 혜택

(1) 변리사스쿨 강의 무제한 수강

- 실강 및 인강 중복/반복 수강가능
- 동차종합반 등록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출제위원, 채점위원 출신 교수특강 (2~5회)

- 종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
- 2차 시험 채점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강의

(3) 2차 스터디 그룹 형성 및 지원

- 스터디 그룹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 및 긴장감 유지
- 2022년 10월 ~ 12월 매일쓰기(특허, 상표, 민소)

(4) 현직 변리사 직접 상담

- 개별상담: 상시진행
- 조별상담: 정기진행(종합반 모집 후 조율하여 결정)

(5) 변리사스쿨 프리미엄 자습실 제공

- 2차종합반전용강의실을 자습실로 제공(빈강의실일때제공)
- 1인 1개의 사물함 제공
- 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6) 변리사스쿨 프리미엄 독서실 특별할인 (선택과정, 조기마감에 주의)

- 비용: 월20만원 -> 월10만원
- 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환불규정]

- 수강하신 강의에 대한 단과비용과 월 30만원(상담 등 기타 관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차감 된 후 환불됩니다.
- 프리미엄 독서실 이용자의 경우, 독서실 할인 받으신 금액이 추가로 차감 된 후 환불됩니다.

★ 동차합격과정[2022년 2월 ~ 7월] ★

1. 종합반 커리큘럼(2022년 2월 ~ 7월)

월	특허법(조현중)	상표법(김영남)
2월		
3월	기본강의(8회) 기초GS(8회)	기본강의(8회) 기초GS(8회)
4월	기초GS(8회) 실전GS A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A형(8회)
5월	기초GS(8회) 실전GS B형(8회)	기초GS(8회) 실전GS B형(8회)
6월	실전GS A형 또는 B형(8회)	실전GS A형 또는 B형(8회)
7월	자율 학습 및 멘토링(시험 막바지 슬럼프 방지, 정신력 관리)	

* 커리큘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커리큘럼상 모든 강의 실강 및 인강을 중복/반복 수강가능
 작년(2021년) 2차 특허법, 상표법 인강도 중복/반복 수강가능
 특허법과 상표법은 조현중·김영남 변리사 이외에 모든 강사의 2차강의 수강가능
 (특허법: 정진환 변리사, 박상보 변리사, 상표법: 이성규 변리사)
 변리사 2차시험일 이후에도 2022년 12월까지 지난 강의 반복/중복 수강가능

2. 종합반 전용_교수님 특강

- ▶ 출제위원급, 채점위원 경력을 다수보유한 교수님 특강
- ▶ 2회 내지 5회
- ▶ 종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

3. 종합반 전용_프리미엄 자습실 및 독서실 안내

(1) 프리미엄 자습실

- ▶ 변리사스쿨 별관에 위치
- ▶ 2차 종합반 전용 강의실
- ▶ 1인 1개의 사물함
- ▶ 22년 3월 ~ 2차시험일까지
- ▶ 24시간 운영원칙
- ▶ 추가비용 없음

(2) 프리미엄 독서실(조기 마감에 주의)

- ▶ 변리사스쿨 본관 2층에 위치
- ▶ 1인 1개의 사물함
- ▶ 종합반 특별할인 월 10만원(정가 20만원)
- ▶ 독서실은 선택과정, 프리미엄 자습실과 중복제공
- ▶ 22년 2월 21일부터 2차시험일까지
- ▶ 24시간 운영 원칙

4. 종합반 전용_스터디 형성 및 관리

(1) 스터디 형성

- ▶ 5명 내외 스터디 형성(스터디 참석이 필수는 아님)
- ▶ 2차 종합반 OT(22년 2월 27일 오후 4시 예정)에서 결정
- ▶ 선택과목 고려

(2) 스터디 관리(조현중, 김영남 변리사 밀착지도)

- ▶ 스터디마다 성향에 맞추어 출책, 퇴책, 진도확인 등 체계화
- ▶ 매일쓰기 피드백 상담

5. 종합반 전용_개별상담 및 조별상담

- ▶ 개별상담은 신청에 따라 상시진행
- ▶ 개별상담은 신청이 없어도, 밀착지도가 필요한 경우 진행
- ▶ 조별상담은 정기적으로 진행(구체적 일정은 스터디 형성 후 결정)

2차 시험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책임진다

기득합격과정[2022년 8월 ~ 12월]

1. 종합반 커리큘럼(2022년 8월 ~ 12월)

월	특허법(조현중)	상표법(김영남)
8월	1차시험 이후 멘토링(기득을 위한 수험계획 상담 등)	
9월	판례심화강의(8회)	판례심화강의(10회)
10월	사례강의(8회)	사례강의(8회)
11월	기출강의(6회)	기출강의(6회)

* 커리큘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강의에 대한 실강 및 인강을 중복/반복 수강가능
- ▷ 특허법과 상표법은 조현중·김영남 변리사 이외에 모든 강사의 2차강의도 수강가능

2. 매일쓰기 지원(2022년 10월 ~ 12월)

과목	횟수	기간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특상 종합반도 민사소송법 포함) ※ 담임: 김영남 변리사	주5회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1단계

1시간쓰기
50점분량

목표: 11월



실력향상시
업그레이드

2단계

2시간쓰기
100점분량